

「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2. 11. 1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. 11. 26일 제191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- 진부장례식장이 건립 운영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여 운영에 일관성을 유지하고,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료가 인근 지역의 장례식장과 대비 현저히 낮아 현실화 조정하여 운영비를 확충하는 등 장례식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장례식장 명칭 및 위치 개정 : 조례 제2조
 - 평창장례식장 :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
 - 진부장례식장 :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1970-11
- 시설 사용료 개정 : 조례 제9조 [별표 1] 장례식장 시설사용 기준
 - 현 행

시설명	식당	분향소	안치실	염사료
사용기준	1일	1일	1일	1회/1구
사 용 료	68,400원	22,800원	22,800원	57,000원

- 개 정

시설명	분향실	접객실	안치실	염습료
사용기준	1일	1일	1일	1회/1구
평창장례식장	32,000	96,000	32,000	80,000
진부장례식장	41,000	115,000	40,000	80,000

3.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진부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존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용료 징수 단가를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.
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진부장례식장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으며
 -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분향실, 접객실, 안치실 등으로 세분화하고 평창장례식장과 진부장례식장을 각각 구분하여 단가를 인상 조정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진부장례식장의 운영을 앞두고 사용료징수 근거를 마련하면서 타 시·군 장례식장에 비해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 - 다만, 평창장례식장과 진부장례식장의 사용료를 차등화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.